

행복한 도민  
신뢰받는 의회

제342회 임시회  
2015. 9. 11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건설소방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2015. 9. 11.(금)  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7일

(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임헌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7월 1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,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‘담당국장’ → ‘담당실장’으로 명칭 통일(안 제3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시·도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간결하게 표현하였음.

### 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담당국장”을 “담당실장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<u>담당국장</u>으로 하고, 부위원 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   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<u>담당실장</u> ----- ----- 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